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430
----------	-----

2019.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 서울특별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9. 2. 7.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3.6. 상정·의결)

II . 제안설명 요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신설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시건축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도시건축진흥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건축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마.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휴관일, 이용료, 무료이용 대상자, 이용 금지 대상 및 행위의 제한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바.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센터('18.1.~)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19.3.28. 개관 예정)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조례안의 구성은 도시건축진흥시설 정의 및 대상(안 제1조~제4조), 서울도시건축센터(안 제5조~제7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안 제8조~제18조), 운영자문위원회(안 제19조~제24조) 등 총 4장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참고로, 동일 조문(제16조)이 중복되어(제18조와 제19조 사이) 제출되었는데, 조례안 제출시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전시관 중심의 조례안 구성”

- 이 조례안은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홍보·교육·자료축적·공공건축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도시건축진흥시설’로 정의하고, 그 종류를 서울도시건축센터(이하, 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정책·사업·대관 등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센터는 ‘18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전시관은 올해 3월 개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은 양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향후 유사시설 설치 등 시설 확대성을 감안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을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운영·관리사항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조례안의 상당 내용이 전시관의 이용·대관·위탁 등의 사항이고, 센터는 단 3개의 조문으로(기능·자료제출·강좌개설) 센터의 기능 규정 외에는 단편적이고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전시·공연·행사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위원회의 자문도 전시관 운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조례안은 명목상은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사실상은 전시관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음.

“전시관과 센터의 시설 상이성”

-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에 기반한 산업 진흥이 중심인¹⁾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 문화 진흥이 중심으로, 서로 연계성

1) 추진근거 (자료: 서울도시건축센터 설립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22호, 2015.11.5.)

은 있으나 센터는 보다 전문성을, 전시관은 보다 대중성을 요하는 시설로서 각 시설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붙임1).

좀 더 살펴보면,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이 중심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 계획·사업 등의 시민 공유가 중심으로서 민간이 운영하며²⁾, '18년 행정사무감사 및 '19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우리위원회에서 센터와 전시관의 명확한 차별성을 강조한 바도 있음.

- 따라서, 성격이 서로 다른 시설의 운영·관리사항을 하나의 조례³⁾에 규정하기보다는, 이 조례안은 전시관 운영·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 조직, 업무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센터의 근거가 되는 건축서비스법⁴⁾은 2013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건축서비스산업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해당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역할·기능·조직·업무 등의 사항도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체계에서(모법-조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의 사전검토와 발주 및 기획·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공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2.실태조사, 3.정보체계 구축사업, 4.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창업지원, 6.출판 및 홍보, 7.교육·연수, 8.국제 교류·협력, 9.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 2) (사)한국건축가협회 운영('19년 ~ '20년)
- 3) '도시건축진흥시설'은 법령 용어가 아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설 유형을 규정한 것임
- 4)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설계공모 활성화, 공공건축 지원 등) 등을 규정

- 참고로, 건축서비스법이 개정되어(개정 '18.12., 시행 '19.12.) 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제24조의2 신설, 붙임2), 신설 규정을 활용하여 센터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과 더불어, 센터에 필요 한 기능을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대외적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음.

“전시관과 작품 확보 · 관리”

- 이 조례안은 전시관의 이용 · 대관 · 위원회운영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 작품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시 작품의 확 보에서 보관 또는 처분까지, 즉, 구입 · 제작 · 기증 · 임대(유상, 무상) 등 의 작품 확보 사항과 전시 후 보관 또는 처분 사항, 그리고, 작품 훼 손 또는 도난시 조치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전시 작품에 관한 사항들은 실질적인 운영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 운 영 경험이 축적되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운영자문위원회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 어 있으나, 위원회의 자문 사항이 주로 대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붙임3), 위원회 자문 사항 대비 위원회가 과다 구성되지 않도록 위 원 수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규칙에 조례 시행 의 포괄적 위임을 둔 조항(안 제24조)은 삭제하여, 포괄위임의 입법 관 행을 탈피하고, 필요시 필요한 사항만 규칙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료됨.

□ 종 합

- 이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 · 관리

사항을 도시건축진흥시설로 지칭하여 규정코자 하나, 센터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설로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인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보다 대중적 시설로서 각 시설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조례안 구성이 사실상 전시관 운영·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전시관 운영·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은 그 목적과, 역할, 기능, 조직, 업무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도시건축센터의 근거가 되는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서울시 조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해당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에 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적 체계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430
------------	-----------

제안일자 : 2019. 3. 6.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시설 성격이 다르고 이 조례안이 사실상 전시관 운영·관리사항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을 “도시건축전시관”으로 하고,
- 전시관의 기능 및 업무,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 서울도시건축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위원수를 도시건축전시관에 적합하게 조정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안 제1장부터 제4장까지 각각 장제목을 삭제한다.

안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을 “도시건축전시관”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으로, “홍보, 교육, 관련 자료의 축적·보존, 공공건축의 지원”을 “전시·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으로 한다.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를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제6조로 하여 제1항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을 “전시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임대 또는”을 “임대하거나”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전시관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토론,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문화 등에 대한 전시·홍보
2.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
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수집·보존
4.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시설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서울시 문화 진흥 또는 도시건축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소속으로 둔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전시관”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제3항 중 “제19조에 따른 도시건축시설”을 “제16조에 따른 전시관”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2조를 제9조로 하여, 조문명 “행위의 제한”을 “행위 및 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13조를 제10조로 하여, 제1항 중 “건축문화진흥에”를 “도시건축 또는 문화 진흥에”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여,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을 “전시관”으로 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안 제19조를 제16조로 하여,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을 “전시관”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20조를 제17조로 하여, 제1항 중 “10명 이상 15명”을 “11명”으로 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건축진흥시설”을 각각 “전시관”으로 한다.

안 제21조 및 제22조를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안 제23조를 제20조로 하여,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안 제2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u>도시건축진흥시설</u>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u>도시건축전시관</u> -----
제1장 총칙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도시건축진흥시설</u>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u>도시건축진흥시설</u> 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도시건축전시관</u> ----- ----- <u>도시건축전시관</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도시건축진흥시설</u> ”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u>홍보</u> , 교육, 관련 자료의 축적·보존, 공공건축의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u>서울도시건축전시관</u>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u>전시·홍보</u> ,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 ----- -----.
2. “대관”이란 <u>도시건축진흥시설</u> 내각 공간의 사용을 <u>허가</u> 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u>전시관</u> ----- ----- <u>허가받아</u> 전시, -----.
3. “이용”이란 시민들이 <u>도시건축진흥시설</u> 에서 개최되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거나 <u>건축문화강좌</u> 를 수강하는 등 <u>도시건축진흥시설</u>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u>전시관</u> ----- ----- <u>전시관</u> -----.

제3조(운영시설)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신설〉

제3조(운영시설) -----
--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전시관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토론,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문화 등에 대한 전시·홍보

2.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

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수집·보존

4.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시설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서울시 문화 진흥 또는 도시건축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소속으로 둔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건축진흥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
전시관-----

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서울도시건축센터

제5조(기능) 서울도시건축센터의 기능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 지원체계 구축
2. 도시건축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도시건축자료(기록물)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4. 공공건축 통합자료 시스템 구축
5.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교류 및 정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건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견 및 자료제출) 시장은 도시건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축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시

----- 전시
관 ----- .

② -----

임대하거나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장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문화강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제8조(개관 및 휴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4. (생략)

제9조(이용료)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도시건축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신설〉

〈삭제〉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

-----.

1.~4. (제정안과 같음)

제8조(이용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
-----.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삭 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복지수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 가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삭제〉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

---.

1.~2. (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전시관

제10조(대관허가) ① -----

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건축문화진흥에</u>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도 시건축 또는 문화 진흥에 ----- -----. -----.
(② ~ ③ (생략))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u>제14조(대관료)</u> (생략)	<u>제11조(대관료)</u> (제정안과 같음)
<u>제15조(대관료 감면)</u>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의</u>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 전시관 ----- ----- -----. -----.
<u>제16조(대관자의 준수사항)</u> (생략)	<u>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u> (제정안과 같음)
<u>제1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u> (생략)	<u>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u> (제정안과 같음)
<u>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u> (생략)	<u>제15조(운영·관리의 위탁)</u> (제정안과 같음)
<u>제4장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 등</u>	<u>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 ----- ----- ----- -----.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u>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주요 정책의	전시관 ----- ----- ----- -----.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⑤ (생략)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략)

제22조(회의) (생략)

제23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称	위 치	주 要 기 능
서울도시건축센터	종로구 충정길 14 (신문로 2가7-24번)	도시건축 전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 관련 교육 교류 등
서울도시건축분사관	중구 세종대로 119 (대림로 1가 60-6호번)	도시건축 전시 및 시민홍보 기능

4. ----- 전시관 -----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정안과 같음)

제19조(회의) (제정안과 같음)

제20조(위원수당 등)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도시건축전시관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전시·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전시관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시민들이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거나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전시관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토론,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문화 등에 대한 전시·홍보
2.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
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수집·보존
4.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시설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서울시 문화 진흥 또는 도시건축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소속으로 둔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8조(이용료) ① 전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건축 또는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정한다.
- ③ 대관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의 회계처리는 서울특별시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대관허가를 받은 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전시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대관 및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전시관 소관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이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